

WTO에서의 주요국 국내보조 비교와 시사점*

송 주 호**

Keywords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국내보조(domestic subsidy), 감축대상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 최소허용보조(DM: de-minimis), 블루박스(Blue Box: 생산제한계획하의 보조), 세계무역기구(WTO), 경기상쇄직불(CCP: Counter Cyclical Payment)

Abstract

This paper scrutinizes the notified domestic subsidy documents of major member countries of the WTO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n agricultural policy. Every WTO member country should notify its implementation results of domestic subsidy reduction commitment to the WTO for review. The US classified direct payments as green box, but the WTO panel judged that cotton direct payment did not conform with the green box criteria in the UR agreement. Many countries have reduced market price support and depend more heavily on decoupled income support. Korea should follow the same trend in agricultural policy reform to overcome market opening. Many countries utilized technical tips which can be adopted in calculating Korea's domestic subsidy amount in the future.

차례

- | | |
|----------------------|---------------------|
| 1. 서론 | 4. 주요국 국내보조 운영과 DDA |
| 2. WTO에서의 국내보조 통보 현황 | 국내보조 규정의 시사점 |
| 3. DDA에서의 국내보조 감축의무 | 5. 요약 및 결론 |
| 및 전망 | |

* 이 연구는 농림수산식품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2001년부터 시작된 DDA (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에서는 국내보조의 추가적인 감축이 논의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2008년 12월 제시된 DDA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 따르면 일반 선진국은 감축대상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를 45%, 개도국은 30%를 추가로 감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UR (Uruguay Round)에서 약속한 국내보조금 연간 감축한도를 2004년까지 90% 이상 소진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국내보조금 감축약속을 이행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WTO 회원국들은 UR협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검증받기 위해 매년 시장접근물량 도입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미국은 고정직불금을 허용보조인 비연계소득보조로 분류하여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이 미국의 면화보조에 대해 WTO에 제소하였고, WTO 분쟁해결기구에서는 미국의 고정직불금은 채소와 과일을 생산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과 분리되어야 하는 비연계소득보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EU의 SPS(Single Farm Payment Scheme) 제도도 유사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보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30% 이상의 손실에 대한 보조는 허용보조로, 30% 미만의 손실에 대한 보조는 감축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기술적으로 보조금 한도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쌀 직불금에 대해 아직 WTO에 통보하지 않고 있는데 고정직불금을 허용보조로 분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정직불금이 허용보조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으로 도입예정인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도 어떻게 설계하여야 보조금 감축약속을 피해 나갈 수 있을지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DDA에서는 선진국 내에서도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국가는 더 많이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EU와 미국, 일본 등 보조금을 오랫동안 많이 지급해 온 국가들이 앞으로 DDA의 보조금 규정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다. 미국은 2008년도에 농업법을 개정하면서 보조금에 대해서 증액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DDA 감축약속을 이행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도 블루박스를 SPS제도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SPS가 허용보조로 분류된다면 보조금한도는 큰 제약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일본은 쌀에 대한 보조금을 블루박스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AMS는 전혀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2008년도 농업법을 개정하면서 낙농분야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AMS보조금이 적게 계산되도록 하는 편법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주요국들이 보조금 감축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도 이들에게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주요국들의 국내보조정책을 분석한 연구는 많이 있었다. 임송수 등(2007)은 EU의 농업구조 변화와 농정개혁을 상세히 다루었다. 송유철 등(2001)은 미국, EU, 일본, 캐나다의 농업보조금에 관한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밖에 DDA협상에 관해서 연구한 서진교 등(2005a, 2005b), 임송수 등(2003, 2006), 임송수(2003) 등은 DDA 모델리티의 국내보조분야에 관한 논의내용과 우리나라의 전략 등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주요국들의 DDA 협상 제안서의 내용과 모델리티의 논의경과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등을 주로 다루었고, 주요국들이 보조금 집행내역을 실제로 어떻게 통보하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점을 참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고 있다. 실제로 주요국들은 보조금 집행실적을 WTO에 몇 년씩 늦게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최근의 정책변화가 반영된 통보내역을 제대로 분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2009년 1월 현재 우리나라는 2004년, 미국은 2005년, EU는 2003년, 일본은 2006년까지의 이행실적을 통보하였다. 외국의 연구(Blanford and Orden 2008, Josling and Swinbank 2008, Yamashita 2008)들은 통보예상액(shadow notification)을 추산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주요국의 정책변화가 반영된 가장 최근의 통보실적과 향후 통보전망을 분석하였고, 또한 주요국들의 통보내역과 DDA에서의 논의내역을 토대로 국내 농업보조금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구분된다.

이 글의 2장에서는 주요국들의 국내보조에 관한 WTO에의 통보 내역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DDA에서 주요국들의 국내보조 감축의무 한도와 현행 제도하에서도 감축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검토한다. 4장에서는 주요국들의 보조제도와 최근의 DDA 국내보조에 관한 모델리티에서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5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한다.

2. WTO에서의 국내보조 통보 현황

2.1.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WTO에 2004년까지의 보조금 지급실적을 통보하였다. AMS 지급실적은 한도 대비 평균 92%를 지급하였으며, 품목불특정 보조는 생산액 대비 1.25%를 활용하여 최소허용보조(DM: de-minimis)로 분류하였고, 블루박스는 지급실적이 없다.

표 1. 우리나라의 UR 국내보조 연도별 집행 추이

단위: 억 원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농업총생산액	267,361	290,519	303,884	308,696	331,774	331,395	335,683	334,445	330,163	372,886
AMS 전체 지원한도	21,826	21,056	20,287	19,517	18,748	17,978	17,209	16,439	15,670	14,900
OTDS (A)	23,577	23,111	25,923	23,464	20,384	22,153	21,774	23,388	21,161	19,972
현행 AMS	20,755	19,674	19,370	15,628	15,519	16,909	16,316	15,504	14,717	14,584
감축 면제	품목특정 DM	334	533	2,620	2,581	817	1,117	1,477	2,300	1,016
	품목불특정 DM	2,488	2,904	3,933	5,255	4,048	4,127	3,981	5,014	4,372
Blue Box	0	0	0	0	0	0	0	0	0	0
허 용 보 조	40,106	52,138	58,340	54,064	55,182	51,047	57,347	60,929	57,482	49,210

주: OTDS(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는 통보사항은 아니지만 현행 AMS와 품목특정 DM, 품목불특정 DM, 블루박스의 합계이므로 저자가 계산하였음.

자료: 우리나라의 WTO 통보문서.

감축대상보조(AMS)를 품목별 지원내역별로 살펴보면, 2004년도에 쌀, 보리, 옥수수, 유채, 콩에 대한 품목특정적인 보조가 최소허용보조수준(생산액 대비 10%)을 초과하여 현행 AMS(Current AMS) 계산에 포함되었다. 2004년까지 우리나라의 현행 AMS는 전부 시장가격지지에 해당하며, 특히 쌀에 대한 AMS는 전체 AMS 사용액의 평균 97%를 차지하는 등 쌀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그 외 다른 품목특정적인 보조(쇠고기, 우유, 고추, 마늘 등)는 최소허용보조기준에 미달하여 DM으로 통보되었다. 품목불특정적인 보조로는 수리시설 유지관리, 종자수급관리, 경영자금 이차보전,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조 등이 있으며, DM으로 통보되었다.

2.2. 미국

미국은 2008년 11월 현재 2005년까지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WTO에 통보하였는데, 지난 11년간의 통보내역을 개괄적으로 보면 AMS 소진율은 약 26%(1996년)~88%(2000년)로서 심한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품목불특정 보조는 최소허용보조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 블루박스는 1996년에 생산중립적인 직불로 바뀌면서 폐지되었고, 허용보조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무역왜곡보조총액(OTDS)보다 금액이 훨씬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OTDS는 AMS와 품목불특정 DM이 주요 구성요인인데, 국제 곡물 가격의 수준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즉, 국제 곡물 가격이 높았던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OTDS 금액은 낮았으며, 국제 곡물가격이 낮았던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OTDS 금액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 미국의 UR 국내보조 연도별 집행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농업총생산액	190,110	205,701	203,884	190,886	184,735	189,520	198,503	193,151	215,291	234,094	231,885
AMS 전체지원한도	23,083	22,287	21,491	20,695	19,899	19,103	19,103	19,103	19,103	19,103	19,103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14,731	7,095	7,057	15,149	24,297	24,143	21,458	16,328	10,186	18,087	18,918
현행 AMS	6,214	5,898	6,238	10,392	16,862	16,803	14,413	9,637	6,950	11,629	12,938
감면 품목특정DM	101	83	252	173	29	63	217	1,590	435	680	118
보조 품목불특정 DM	1,386	1,115	567	4,584	7,406	7,278	6,828	5,101	2,801	5,778	5,862
블루박스(Blue Box)	7,030	0	0	0	0	0	0	0	0	0	0
허용보조(Green Box)	46,041	51,825	51,252	49,820	49,749	50,057	50,672	58,321	64,062	67,425	71,829

주: 미국은 유통년도를 사용함. 쇠고기 1월, 밀 6월, 쌀 8월, 콩 9월 등 품목별로 시작일이 다름
 자료: 미국의 WTO 통보문서(OTDS금액은 저자가 계산한 수치임)

현행 AMS의 주요 내역은 시장가격지지와 비면제직접지불이다. 비면제직접지불의 대표적인 정책은 비상환용자지불(non recourse loan deficiency payment 등)인데, 지난 10년간의 AMS 지급추이를 보면 국제곡물가격의 등락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며 국제 곡물가격이 매우 낮았던 2000년도에는 88%까지 소진한 바 있다. 2005년 현재 시장가격지지 대상품목은 우유, 설탕이며, 비면제직접지불 대상품목은 보리, 옥수수, 면화, 낙농, 쌀, 땅콩, 콩, 설탕, 밀 등이다

미국은 1996년부터 종전의 부족불지불제도(블루박스)를 폐지하고 도입한 고정직불제도를 허용보조인 비연계소득보조로 통보하였고, 2002년에 도입된 경기상쇄직불

(CCP: Counter Cyclical Payment)은 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품목불특정 AMS로 분류하였다. 미국의 주장은 고정직불제도는 과거의 면적과 단수를 기본으로 하고, 과거 경작한 품목의 생산을 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보조로 분류한다는 것인데, 대체 작물을 일부 제한(직불제 대상농지에 과일과 채소 작물 재배 금지)하기 때문에 허용보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많다¹. CCP는 DDA에서는 새로 규정된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블루박스”로 분류될 전망이다.

품목불특정 AMS에는 관개배수시설지원, 작물보험지원, 1998 ~ 2001년간의 작물시장손실지원직불(Crop Market loss assistance payments)과 2002년 이후의 CCP가 있는데 합계금액이 DM이 되어 당년도 AMS(Current AMS) 계산에서 제외되었다.

허용보조에는 국내식량구호(food stamp)사업과 비연계소득보조, 자연재해 지원, 환경보전 지원 등이 있는데, 2002년부터 국내 식량구호와 환경보전지원 금액이 대폭 늘어나는 등 허용보조의 금액이 점차 늘고 있다.

2.3. EU

EU는 2008년 11월 현재 2003/4년도까지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통보하였다. 그동안 통보된 보조금 내역을 개략적으로 보면, AMS소진율은 42%(2002/3년)~69%(1999/0년)이고 현행 AMS금액은 감소추세에 있다. 품목불특정적인 보조는 금액이 매우 낮아 DM으로 분류되고, 블루박스의 비중이 현행 AMS 대비 41%(1999/0년)~ 87%(2002/3년)까지 되는 등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별로 줄고 있지 않다.

OTDS는 연도별 편차는 있으나 최근의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개혁을 반영하여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2004년 이후에는 단일농가 직불제도(Single Farm Payment Scheme: SPS)를 도입하여 AMS 사용액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²

¹ 미국과 브라질 간의 WTO 면화보조금 분쟁에서 미국의 면화보조금은 WTO 규정의 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음. 만일 고정직불제도를 허용보조가 아닌 AMS로 산입한다면 미국의 AMS 감축약속은 1995~2004년까지 10년 동안 4번이나 한도를 초과한다는 주장이 있음(Blandford and Orden 2008).

² Swinbank and Tranter(2005)는 미국의 면화보조금과 같이 SPS도 대상토지에 과수와 채소를 심지 못하게 하므로 허용보조로 인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주장함.

표 3. EU의 UR 국내보조 집행 추이

단위: 백만 유로

구 분	95/96	96/97	97/98	98/99	99/00	00/01	01/02	02/03	03/04
농업총생산액	207,400	219,700	217,800	213,500	233,700	243,359	246,418	242,955	237,388
AMS 전체지원한도	78,672	76,369	74,067	71,765	69,463	67,159	67,159	67,159	67,159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68,995	73,040	70,970	67,313	54,779	66,437	63,840	55,159	57,715
감축보조(AMS)	47,526	51,009	50,194	46,683	47,886	43,654	39,281	28,490	30,880
감면 품목특정DM	-154	-201	-154	-222	-109	23	260	1,004	901
보조 품목불특정DM	777	711	486	348	291	537	574	938	1,052
블루박스(Blue Box)	20,846	21,521	20,443	20,504	19,792	22,223	23,726	24,727	24,782
허용보조(Green Box)	18,718	23,628	18,167*	19,168	21,916*	21,848*	20,661	20,404	22,074

주: EU도 유통연도를 사용하며 시작일은 품목마다 다름. 03/04년부터는 EU25로 확대된 수치임

자료: EU의 WTO 통보문서.(OTDS금액은 저자가 계산한 수치임)

AMS를 지급한 것으로 통보한 품목들은 다양한데, 주로 곡물, 설탕과 분유, 버터, 그리고 쇠고기에 대해서는 가격지정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우유, 건초, 바나나, 담배, 쇠고기에 대해서 비면제직접지불로 지원하고 있다. 품목불특정 보조는 비료, 작물 보험 등에 지급되고 있으며 금액이 2003/4년의 경우 농업생산액 대비 0.4% 정도로 매우 작아 DM으로 통보되고 있다.

EU는 블루박스를 많이 활용(OTDS의 29%~45%수준)하고 있으며, 경종작물에 전체 BB의 약 70%정도, 그리고 소에 약 30%를 지급하고 있다. 허용보조에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과 달리 현행 AMS보다도 금액이 적다는 것이 특징이다.

2.4. 일본

일본은 2006년까지 보조금 지급실적을 통보하였다. 그동안의 통보내역을 보면, AMS 소진율은 14%(2006년) ~ 73%(1995년)을 보이고 있는데, 1998년 양정개혁을 통해 쌀의 AMS를 블루박스로 전환한 이후 현행 AMS 금액이 대폭 감소하였다. 품목 특정한 보조 가운데 DM으로 분류된 금액과 품목불특정적인 AMS의 금액이 매우 작다. 블루박스는 1998년 도입되었으나 금액이 매우 작고, 허용보조는 점차 금액이 줄고 있다. OTDS는 현행 AMS와 같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표 4. 일본의 UR 국내보조 집행 추이

단위: 10억 엔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농업총생산액	10,450	10,249	9,832	9,944	9,418	9,122	8,881	8,926	8,901	8,786	8,806	8,290
AMS 총지원한도	4,801	4,635	4,470	4,304	4,138	3,973	3,973	3,973	3,973	3,973	3,973	3,973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3,545	3,367	3,207	892	873	834	790	860	746	717	699	679
현행 AMS	3,508	3,330	3,171	767	748	709	667	730	642	608	593	571
감면 품목특정DM	13	11	12	53	10	11	12	23	18	24	23	19
보조 품목불특정DM	24	26	24	22	22	21	20	20	18	17	18	19
블루박스(Blue Box)	0	0	0	50	93	93	91	87	68	68	65	70
허용보조(Green Box)	3,169	2,826	2,652	3,002	2,679	2,593	2,547	2,275	2,086	2,094	1,916	1,802

주: 일본은 대부분 4월 1일 시작되는 회계 연도를 사용함. 일부 품목(전분, 설탕, 견사)은 유통연도를 사용함.
 자료: 일본의 WTO 통보문서. (OTDS금액은 저자가 계산한 수치임)

AMS 지급실적을 보면 1998년 이후 감축약속에 대해 큰 부담없이 운용하고 있다. 시장가격지지로 설탕, 감자, 고구마,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지원하였고, 비면제 직접지불로 밀, 보리, 콩, 우유, 쇠고기 등을 지원하여 2006년도에 현행 AMS로 5,712억 엔을 지원하였다.

일본의 시장가격지지 계산방식에서 특이한 점은 첫째, 쌀의 경우 정부의 구매비중은 1990년대 초 20% 미만이었으나 AMS 계산시 국내외 가격차에 전체 생산물량을 곱함으로써 쌀의 기준AMS를 2조 8,701억 엔으로 크게 늘릴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매물량만을 곱하여 쌀의 기준AMS는 2조 1,093억 원으로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졌다³. 둘째, 보리와 밀의 경우 시장가격지지 대상물량을 1999년까지는 전체 생산물량을 적용하다가 2000년부터는 정부 수매물량을 적용하여 대상물량을 변경하였다. (밀: 1999년- 583,100톤, 2000년- 23,500톤 보리: 1999년- 205,300톤, 2000년- 11,400톤) 셋째, 쇠고기의 경우 외부참조가격을 계산할 때 쇠고기 수입가격에 품질격차계수 2.0을 곱한다. 이렇게 품질격차 계수를 설정함으로써 국내외 가격차를 축소하였고 매년도 통보하는 쇠고기 AMS 금액을 줄일 수 있었다⁴.

품목별 감축대상 보조금 중 DM을 초과하여 지급한 품목으로는 쌀(1997년까지), 밀, 대두 등 주요 작물과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있다. 품목불특정 보조로는

³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준연도를 UR협상의 공식인 1986-1988년이 아닌 1989-1991년을 사용하였고, 쌀의 경우에는 1993년 자료를 이용한 수치를 () 에 표기하였고, 이 () 안의 숫자를 적용하여 보조금 감축약속을 이행하였음.

⁴ 일본은 이런 방식을 OECD에서도 생산자 지지추정치(PSE) 를 계산할 때 이용함으로써 PSE 수치를 낮추고 있음.

농작물보험에 대한 지원이 있으며 금액이 적어 DM으로 통보되고 있다.

허용보조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일반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은퇴농가 지원과 환경보전 지원이 늘고 있다. 일반서비스에 대한 지출가운데에서도 사회간접자본(관배수 시설, 농촌도로, 경지합병 등)에 대한 지출 비중이 매우 높아 200년의 경우 전체 일반서비스 비중의 55%, 전체 허용보조의 43%를 차지한다. 쌀의 전작프로그램과 논·밭의 기능유지를 위한 지원금은 환경프로그램으로 통보하고 있다.

2.5. 주요국 국내보조 통보내역의 비교

UR 당시 주요국의 농업생산액 대비 AMS양허 한도 설정비율을 살펴보면 EU와 일본은 매우 높고, 미국은 중간, 그리고 우리나라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UR에서 1986-1988년도 보조금 지급실적을 감축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미 농업부문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⁵하던 선진국들은 유리했고, 우리나라 등 개도국들은 당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아직 낮은 단계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조금 전체한도(ceiling)가 불리했다고 볼 수 있다.

표 5. 국가별 국내 보조 한도 및 실적(1995년)

구분	미국 (백만 달러)	EU(95/96) (백만 유로)	일본 (10억 엔)	한국 (억 원)
농업총생산액(A)	190,110	207,400	10,450	267,361
AMS양허한도(B)	23,083	78,672	4,801	21,826
현행AMS(C)	6,214	47,526	3,508	20,755
최소허용보조	1,487	623	37	2,822
블루박스	7,030	20,846	0	0
OTDS(D)	14,731	68,995	3,544	23,781
B/A(%)	12.1	37.9	45.9	8.2
C/B(%)	26.9	60.4	73.1	95.1
D/A(%)	7.7	33.3	33.9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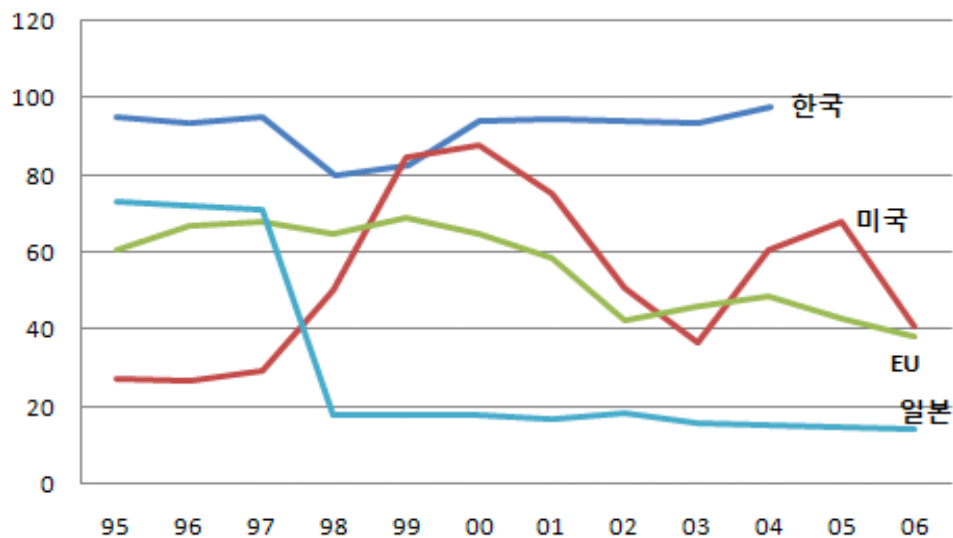
자료: 각국의 WTO 통보문서

⁵ 미국과 EU는 블루박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AMS 감축기준에 포함하되 현행 AMS 계산에서는 제외하기로 합의(1992. 블레이 하우스 합의)함으로써 AMS 양허 한도가 높아지고 현행 AMS 소진율은 낮아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쌀에 대해 생산전량을 대상물량으로 하여 AMS 한도를 높인 기술적인 이유도 있음.

UR 이행 초년도인 1995년도를 보면 EU는 농업생산액의 37.9%를 AMS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45.9%, 미국은 12.1%, 우리나라는 8.2%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AMS 소진율도 통보기간 평균 EU는 60%, 일본은 30%, 미국은 54%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92%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만 AMS 한도가 실질적인 보조금 제약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AMS 소진율은 연도별로 변화를 보이는데, 2004년에 AMS 소진율이 EU는 46%, 일본은 15%, 미국은 6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98%에 달하였다.

그림 1. 주요국의 연도별 AMS 소진율 비교



3. DDA에서의 국내보조 감축의무 및 전망

DDA가 아직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2008년 12월에 배포된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서 국내보조 감축의무는 대부분 단일 숫자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4차 수정안의 내용을 토대로 각국의 국내보조 감축의무를 살펴보고 현재도로 감축약속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3.1. 우리나라

DD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는 AMS를 30% 감축해야 하고 최소허용보조는 33.3%, OTDS는 36.7%를 감축해야 한다. AMS를 30% 감축하면 AMS 한도가 1조 43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2004년도에 양정개혁을 통해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쌀소득보전제의 변동직불금액만 AMS에 포함하면 되기 때문에 2005년부터는 AMS 운용에 다소 여유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향후 쌀값이 많이 하락하게 되면 AMS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OTDS는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농업생산액 대비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품목불특정 DM 사용실적이 적고 블루박스 활용을 하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별로 부담이 없을 것이다.

3.2. 미국

DDA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 따르면 미국은 OTDS를 70% 삭감하여야 하고, AMS는 60% 삭감하여야 한다. OTDS 기준액은 482억 2,400만 달러이므로 이행연도 말 한도는 144억 6,700만 달러이다. AMS 기준액은 191억 300만 달러이고 이행연도 말 한도는 76억 4,100만 달러이다.

2006년과 2007년에는 국제 곡물가격이 높아서 미국의 AMS와 OTDS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축대상보조인 품목불특정보조로 분류되는 CCP를 보면 국제곡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006년과 2007년에는 과거에 비해 지불금액이 대폭 감소하였다. 대부분 품목의 시장가격이 융자율(loan rate)보다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AMS 계산에 포함되는 품목특정적인 마케팅론 프로그램에 의한 지불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Blanford and Orden(2008)은 2006년 미국의 AMS 통보예상액을 78억 달러로 추정하였다. 이는 미국의 2006년 AMS 한도인 191억 달러의 41%에 불과하며, 2007년도에도 AMS 한도는 걱정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품목불특정보조로 분류하고 있는 CCP는 DDA가 타결될 경우 새로운 형태의 블루박스로 분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때 OTDS 수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미국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7번 150억 달러를 초과한 바 있다.

표 6. 미국의 품목별 연도별 CCP 지급액 실적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02/03	03/04	04/05	05/06	06/07(p)	07/08(p)
CCP 총 지불액	1,804	544	4,288	4,749	1,527	862
-쌀	324	14	161	104	0	0
-옥수수	0	0	2,212	2,709	0	0
-밀	0	0	0	0	0	0
-콩	0	0	0	0	0	0
-수수	0	0	160	159	0	0
-귀리, 보리	0	0	0	0	0	0
-면화	1,365	353	1,349	1,327	1,322	826
-땅콩	185	141	156	207	206	36

주: 2006~2007년은 가격전망을 토대로 한 저자의 추정치임.

자료: USDA/ERS, Situation and outlook Report. Agricultural Projection to 2017 (2008)

미국의 새로운 2008 농업법에서는 수입보장제도(ACRE: Agricultural Crop Revenue Election)를 2009년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ACRE는 CCP와 달리 품목별로 이동평균 가격과 단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품목특정적인 보조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품목별 AMS 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ACRE에 가입하면 농가는 고정직불금의 20%, 마케팅론의 30%를 적게 받으므로 AMS가 다소 줄어들 여지도 있다. 또한 ACRE에 가입하면 CCP를 받지 못하므로 ACRE 가입자가 많아지면 블루박스 사용이 더 감소할 것이다.

2008농업법에서는 체다치즈와 버터, 탈지분유의 최저매입가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2농업법에서 우유최저가격 (\$9.9/cwt)을 유지하기 위해 체다치즈와 버터, 탈지분유를 매입해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과는 성격이 달라졌다. 따라서 미국은 향후 낙농의 AMS 계산시 시장가격지지 적용물량(eligible production)을 전체 우유생산량이 아닌 체다치즈와 버터, 탈지분유에 해당되는 생산물량만 적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 경우 미국의 낙농 AMS는 65% 정도(금액으로는 36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Blandford, Laborde, Martin 2008).

한편, 2008농업법에서는 밀, 보리, 귀리 등 일부품목의 융자가격(loan rate)을 인상하여 AMS 부담이 다소 늘어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곡물가격이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미국의 2008농업법은 큰 수정 없이도 DDA 감축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면화는 품목특정 AMS와 BB 수준, 그리고 설탕은 품목특정 AMS 한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Blandford 외 2008).

3.3. EU의 국내보조 감축 전망

EU는 국내보조가 많아 DDA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서는 감축률이 가장 높은 최상위 구간에 해당되어 OTDS는 80%, AMS는 70%를 삭감하여야 한다. EU의 기준 OTDS는 UR 양허 AMS 672억 유로와 1995~2000년 평균생산액의 10%인 223억 유로, 그리고 블루박스 통보액 평균 209억 유로를 합해 1,103억 유로이며, 이행년도 말에는 OTDS는 220억 유로가 되어야 한다. AMS 한도는 이행년도 말에 201억 유로가 되어야 한다.

EU는 2003년에 2003 피슬러 개혁(Fischler Reform)으로 단일농가지불제도(SPS)를 도입하였고, 2004년에 면화, 올리브, 담배 개혁, 2005년에 설탕개혁, 2007년에 과일과 채소 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에 무역왜곡보조금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SPS제도도 미국의 CCP와 같이 채소, 과수 등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허용 보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Swinbank and Tranter 2005).

Josling and Swinbank(2008)는 EU가 아직 WTO에 통보하지 않은 2004/05년, 2005/06년, 2006/07년의 EU 보조금을 추산하였는데, 상당수의 블루박스 보조금이 허용 보조로 전환되고 따라서 OTDS 금액이 감소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7. EU의 보조금 통보 예상액

단위: 10억 유로

구분	실제 통보액	통보추산액(Shadow Notification)		
	2003/04	2004/05	2005/06	2006/07
Green Box	22.1	22.1	32.5	36.6
Blue Box	24.8	24.3	11.0	3.6
Current AMS	30.9	32.9	29.0	25.8
UR Bound AMS	67.2	67.2	67.2	67.2
OTDS	56.7	59.1	41.9	31.3

자료: Josling and Swinbank (2008)

Josling and Swinbank(2008)는 EU가 단일농가지불제도(SPS)를 허용보조로 통보한다면 2013/14년에 AMS는 164억 유로, 블루박스는 2억 유로, 허용보조는 579억 유로로서 DDA에서의 보조금 감축약속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품목별 AMS 상한 조항 때문에 최근의 통보금액이 1995-2000 평균통보액보다 큰 품목들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중 일부는 최근의 개입가격 인하로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며, 사과, 오이, 건초 등은 문제될 소지가 있다. 다만, 최근의 과일과 채소개혁을 통해 보조금이 생산자 단체를 통해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AMS 계산방식도 바뀌면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Jean, Josling and Laborde 2008)

3.4. 일본의 국내보조 감축 전망

일본은 DDA가 이행되면 OTDS는 70%, AMS는 70%를 삭감하여야 한다.⁶ 기준 OTDS는 UR 양허 AMS 3조 9,729억 엔과 1995~2000년 평균생산액의 10%인 9,836억 엔, 그리고 블루박스 통보액보다 농업생산액의 5%가 크므로 4,918억 엔을 합해 5조 4,484억 엔이며, 이행년도 말에는 OTDS는 1조 6,345억 엔이 한도이다. AMS 한도는 이행년도 말에 1조 1,919억 엔이 되어야 한다.

일본의 2006년도 OTDS 사용액이 6,790억 엔, AMS 사용액이 5,710억 엔에 불과하므로 일본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보조금 감축에 부담이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Yamashita 2008).

3.5. DDA에서의 주요국 보조금 감축의무 비교

DDA에서는 보조금이 많은 국가는 더 높게 감축하도록 함으로써 개도국에게는 UR 당시의 불공정성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DDA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생산액 대비 OTDS 한도비율은 미국이나 EU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으며, AMS 한도 비율도 다른 나라와의 격차가 UR에 비해 많이 감소될 것이다.

표 8. 주요국들의 OTDS, AMS 한도 비교

	감축율 (%)		농업생산액(A)	이행년도 말 한도		비율 (%)	
	OTDS	AMS		OTDS(B)	AMS(C)	B/A	C/A
EU	80	70	2,674억 유로	220억	201억	8.2	7.5
미국	70	60	2,341억 \$	145억	76억	6.2	3.3
일본	70	70	8조 7860억 엔	1조 6,340억	1조1,920	18.6	13.6
한국(개도국)	36.7	30	37조 2,886억 원	6조 602억	1조 430	16.3	2.8

주: 농업생산액은 2004년도 기준임. (EU는 2003/4년도)

⁶ 일본의 AMS 감축율은 원래는 모델리티 4차 수정안 para 13 (b)에 따르면 60%가 되어야 하지만, para 14에서 최종양허 AMS가 평균생산액의 40%를 초과하면 상위구간의 감축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70%를 감축해야 함.

또한, DDA 협상에서는 AMS와 BB의 품목별 상한을 설정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 UR 이행 기간 중 통보한 금액의 평균이 상한인데 비해, 개도국은 평균 통보액 이외에도 품목별 생산액의 20%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어 신규 품목에 AMS를 지급할 수 있는 융통성이 높아졌다.

4. 주요국 국내보조 운영내역과 DDA 국내보조 규정의 시사점

4.1. AMS 계산 방법의 시사점

AMS를 계산할 때 시장가격 지지의 대상물량 계산 방법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시장가격 지지의 대상물량(eligible production)을 전체 생산량으로 할 것인지, 혹은 실제 수매물량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AMS 계산이 달라진다. 일본은 UR 이행기간 동안에 밀과 보리의 시장가격지지물량을 생산량에서 수매량으로 줄였고, 미국은 2008 농업법에서 낙농의 가격지지물량에 대해 전체우유 생산량에서 체다치즈, 버터, 탈지분유 해당물량으로 줄이려 계획하고 있다. 논리적으로는 정부 수매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더라도 전체 생산물량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전체물량을 대상물량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쌀, 보리 등 수매제도를 운영하는 품목의 경우 수매물량만을 AMS 계산에 산입하였다. 이에 따라 AMS 금액은 작아졌지만, 수매물량을 감소하면서 수매가를 인상할 수 있었다. 만일 생산량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AMS 금액은 커질 수 있었겠지만 수매가 동결 내지 인상은 불가했을 것이다. 현재 AMS 대상품목 가운데 대상물량을 줄여 AMS를 작게 하는 방법은 활용하기 어려우나, 향후 품목특정 AMS를 신설할 경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4.2. 보조금 분류방식 전환의 시사점

AMS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 보조정책의 융통성 확보를 위해 허용정책과 블루박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종전에 블루박스로 통보되던 부족불지불제도(Deficiency Payment)를 1996년에 폐지하고, 허용보조인 생산탄력계약지불제도

(Production Flexibility Payment)로 전환하였다. EU는 블루박스인 직접지불제도를 허용 보조인 단일농가지불제도(SPS)로 점차 전환해 나가고 있고, 일본은 1998년에 AMS인 쌀 수매제도를 블루박스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AMS에 산입되던 쌀 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고정직불금은 허용보조로, 변동직불금은 품목특정 AMS로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DDA에서는 품목특정 AMS인 쌀 변동직불금액이 쌀값에 따라 좌우되는데 AMS 한도 이내에서 운용해야 하므로 쌀 변동직불제를 블루박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조금의 분류와 관련하여 품목불특정보조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CCP는 품목 불특정 AMS로 분류하여 DM으로 현행 AMS 계산에서 제외하고, 캐나다의 CAIS도 30% 미만의 손실에 대한 보조는 품목 불특정보조로, 손실 30% 이상에 대한 정부지원은 소득보험/소득안전망 프로그램에 의한 허용보조로 통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품목불특정보조의 활용비율이 낮으므로 품목불특정보조의 활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4.3. 품목 분류 범위의 시사점

품목의 분류 범위 문제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DDA 협상에서는 이행계획서에 품목특정적 AMS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품목을 어느 정도 세분화할 것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EU는 2003/04년에 56개 품목에 대한 AMS를 통보(DM 포함)하였는데, Common wheat, Durum wheat 그리고, 버터, 탈지분유, 우유 등으로 품목을 세분화하여 세부품목별 AMS와 생산액을 통보하였고, 일부 품목(가공용 포도 등)에 대해서는 생산액을 통보하지 않으면서(n.a.로 표기) 현행 AMS에 산입하였다. 미국은 2005년에 23개 품목에 대한 AMS를 통보(DM포함)하였는데, 낙농, 가축, 과수원과 포도원(orchard and vineyard)을 각각 하나의 카테고리 분류하였다. 일본은 2006년에 13개 품목에 대한 AMS를 통보(DM포함)하였는데, 채소, 과일을 각각 하나의 카테고리 분류하였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25개 품목특정적 AMS를 통보하였는데, 보리와 맥주보리를 구분하였고, 기타 곡물, 기타 채소, 기타 과일, 약용작물, 임산물, 화훼류 등으로 대분류하였다. DDA에서는 현재 품목특정 AMS에 산입되는 품목은 그대로 표기하고, 향후 보조금 지급 계획이 있는 품목은 별도 품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향후 계획이 분명치 않은 경우는 동일 부류의 품목과 통합하여 대분류하면 융통성이 확보될 수도 있다.

4.4. 농정 패러다임 변화의 시사점

WTO 라는 국제적 규범 내에서 농정 패러다임을 개혁할 때 생산과 무역에 대한 왜곡이 적은 정책으로의 전환, 그리고 품목불특정적인 보조가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WTO와 OECD에서는 가격지지정책이 무역 왜곡 효과가 가장 크다고 분석하면서 생산중립적(decoupled)인 직접지불제로의 전환을 권장하고 있다. OECD는 PSE 계산시 생산과 무역왜곡 정도에 따라 농업정책을 분류하고 있는데, 산출량(output)을 기준으로 하는 시장가격지지정책, 투입재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지불, 생산을 요구하면서 현행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직불, 과거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직불,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직불 순으로 왜곡정도가 약해진다고 분류하고 있다(OECD 2008). 하지만 우리의 경우 현재 쌀 변동직불금은 경작자에게만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생산에 대한 왜곡효과를 낮추기 위해 생산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급하는 제도로 바꾼다면(새로운 형태의 블루박스) 2008년도의 쌀 직불금 파동에서 본 것처럼 국민정서상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러 품목별 직접지불제도를 통합하여 농가 단위로 하나의 직접지불제로 운용하면서 품목 특정한 성격을 배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캐나다의 CAIS제도, EU의 단일 농가직불제도, 일본의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등이 대표적이다. EU의 단일 농가직불제도(SPS), 일본의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중 생산조건 격차 개선대책의 직접지불금은 허용보조인 생산비연계 소득보조로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 농업분야 보완대책(농림부, 2007. 11)에서는 직접지불제를 장기적으로 농가 단위 소득안정제⁷로 흡수하고, FTA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FTA 품목별 소득보전직불제도도 장기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로 대체해 나간다는 농정목표를 발표하바 있다.

또한 최근, 가격이 아니라 수입을 보장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세계적 추세이다.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정책은 가격변동이 생산량변동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므로 농가의 수입안정이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어⁸ 최근에는 농가의 조수입을 보장하는 정

7 농가단위 소득안정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박성재 등(2006) 참조. 농림부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를 일정연령 미만 일정규모 이상 주업농에 대해 당해 연도 농업소득(조수입)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질 때 그 격차의 일부(예; 80%)를 보전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음(농림부 2007. 11).

8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04년 옥수수 풍년으로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농가 수입은 줄지 않았는데도 CCP가 지급되었으며, 반대로 2005년도에는 가뭄으로 옥수수 수

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캐나다의 CAIS제도, 미국의 ACRE제도, 일본의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중 수입변동완화대책 등은 농가의 조수입을 보장한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 대책의 피해보전직불제에서는 가격기준이 아닌 조수입기준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4.5. DDA 국내보조 모델리티의 시사점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 제시된 국내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허용보조금과 관련하여 개도국에게 유리하게 수정된 조항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DDA에서는 개도국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지원할 경우에는 손실이 직전 5년간 혹은 올림픽 평균의 30% 미만인 경우도 허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인수범위를 80%로 한 경우도 허용보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혹은 국내식량구호 목적의 경우에는 저소득/자원빈곤생산자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사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더라도 가격 차이를 AMS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필요한 경우 활용을 검토할 수도 있다.

5. 요약 및 결론

WTO 회원국들은 UR 협상에서 합의된 감축대상 보조금의 연도별 감축한도를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를 매년 WTO에 통보해야 한다. 주요국들이 통보한 내역을 분석해 보면 AMS의 소진율이 우리나라는 80%~98%로 매우 높은데 비하여 미국은 26%~88%로 변동이 심하고, EU는 42%~69%, 일본은 14~73%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은 정책개혁을 통해 감축대상보조인 시장가격지지를 줄이고 허용보조에 해당하는 비연계소득보조를 확대하여 보조금 감축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는 품목불특정적인 보조금액은 매우 낮아 최소허용보조에 해당되어 감축을 면제받고 있다.

2008년 12월 제시된 DDA 모델리티 4차 수정안의 국내보조금 감축내용에 따르면

확이 줄어 가격이 올랐으나 농가수입은 줄었는데도 CCP는 지급되지 않았음(Babcock et. al. 2005).

OTDS 감축율이 EU는 80%, 미국과 일본은 70%이지만 EU와 일본은 현재의 정책으로도 보조금 감축에 큰 부담이 없을 전망이며, 미국은 국제곡물가격이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감축약속을 이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2004년까지는 AMS를 90% 이상 소진하였으나 2005년도에 양정개혁을 통해 쌀의 시장가격지지정책을 철폐하고 고정직불제는 허용보조로 분류하고, 변동직불제만 AMS 계산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조금 감축부담은 다소 줄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쌀의 시장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AMS 감축한도에 대한 불안정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UR 당시 우리나라는 AMS 양허한도가 농업총생산액의 8.2%에 불과한데 EU는 37.9%, 일본은 45.9%, 미국은 12.1%를 차지하여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들에 비해 불리하게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불리한 조건은 DDA 모델리티에서 보조금 비율이 높은 국가는 더 많이 감축하도록 함에 따라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2008농업법에서 낙농품의 가격지지를 위한 구매대상을 종전의 전체 우유생산량에서 체다치즈, 버터, 탈지분유 생산량으로 한정함으로써 실질 지원 내용은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MS 금액은 36억 달러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된다. 우리도 이러한 내용을 향후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해야 한다.

주요국들의 보조정책을 살펴보면 시장가격지지 정책에서 점차 소득보전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생산과 연계된 보조에서 점차 비연계(decoupled)된 정책으로, 그리고 품목별 정책에서 농가단위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를 도입할 계획이므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며 품목특정적인 정책을 가급적 품목불특정적인 보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번 DDA 모델리티에서는 품목별 보조금에 대한 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품목 분류시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나친 세분화를 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문헌

- 농림부. 2007. 「한-미 FTA 농업분야 보완대책」. 2007. 11.
- 서진교, 임소영. 2005a. 「2005DDA농업협상 대응전략」. R 49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진교, 임소영, 김상현, 조규대, 이재욱. 2005b. 「DDA 농업분야 모델리티 협상대응에 관한 연구」. C2005-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유철, 임송수, 박지현, 임정빈, 김태곤. 2001. 「주요국농업정책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WTO 협동연구시리즈 01-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임송수. 2003. 「국내보조에 관한 WTO/DDA 농업협상 전략」. P5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송수, 이재욱, 서진교, 김상현. 2003.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C2003-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송수, 김상현, 임소영. 2006. 「DDA농업모델리티 협상안의 평가와 대응방향」. R53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송수, 버클리 힐. 2007. 「EU 농업구조 변화와 농정개혁 연구」. R56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Babcock, B.A. and C.E. Hart. 2005. "Safety Net Design for the New Farm Bill." Iowa Ag Review Center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Vol 11. No.3.
- Blandford, D., D. Orden. 2008. United States: shadow WTO Agricultural domestic Support Notifications November 2008, IFPRI Discussion Paper 00821.
- Blandford, D., D. Laborde and W. Martin. 2008.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of the May 2008 Draft Agricultural Modalities. ICTSD.
- Jean, S., T. Josling and D. Laborde. 2008. Implications for the European Union of the May 2008 Draft Agricultural Modalities. ICTSD.
- Josling, T., A. Swinbank. 2008, European Union: Shadow WTO Agricultural domestic Support Notifications October 2008, IFPRI Discussion Paper 00809.
- OECD 2008. OECD's Producer Support Estimate and Related Indicators of Agricultural Support Concepts, Calculations, Interpretation and Use (The PSE manual).
- Swinbank, A., R. Tranter. 2005. Decoupling EU Farm Support: Does the new single Payment scheme Fit within the Green Box? *The Estey Centr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Trade policy*. 6(1): 47-61.
- WTO, 2008.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TN/AG/W/4/Rev.1.2,3.
- _____. 한국의 국내보조금 WTO 통보문서, G/AG/N/KOR/7, 10, 14, 18, 24, 31, 37.
- _____. 미국의 WTO 통보문서 G/AG/N/USA/5, 17, 27, 36, 43, 51, 60.
- _____. EU의 WTO 통보문서 G/AG/N/EEC/12, 16, 26, 30, 38,49,51, 53.
- _____. 일본의 WTO 통보문서 G/AG/N/JPN/ 21, 34, 47, 61, 72, 98, 108, 124, 129, 132, 137.
- _____. 캐나다의 WTO 통보문서 G/AG/N/CAN/17, 35, 37, 43, 49, 53, 60, 66, 69, 71.
- Yamashita, K. 2008. Implications for Japan of the July 2008 draft Agricultural Modalities. ICTSD, September 2008.

원고 접수일: 2009년 2월 23일 원고 심사일: 2009년 3월 3일 심사 완료일: 2009년 4월 13일
--